

제2727호
2020. 4. 1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0-30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화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303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04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대
여 및 전출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여 구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
- 나. 조례 내 표기의 통일성 확보 및 한글 맞춤법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가.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다만 전출된 예산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시 전입시
키도록 함
- 나.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별관 2층 주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전화 : 02-3396-6

193, FAX : 02-3396-8869, E-mail : whh87@junggu.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을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반회계로 부터”를 “일반회계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법 32조”를 “법 제32조”로 한다.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외”를 “용도 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출한 예산을 전입하여야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세입) 회계수입은 다음의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4. <u>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u></p> <p>5. ~ 7. (생략)</p> <p>8. <u>법 제24조의 2에 따른 과징금</u></p> <p>9. (생략)</p> <p>10. <u>법 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u></p> <p>11. (생략)</p> <p>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후단 신설></p> <p>1. ~ 7. (생략)</p> <p><신설></p> <p>제5조(일시차입) ① (생략)</p> <p>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 <u>주차장특별회계</u>-----.</p> <p>제3조(세입) ----- 각 호-----.</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일반회계로부터</u>-----</p> <p>5. ~ 7. (현행과 같음)</p> <p>8. <u>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u></p> <p>9. (현행과 같음)</p> <p>10. <u>법 제32조</u>-----</p> <p>11. (현행과 같음)</p> <p>제4조(세출) ① ----- 용도 외----- -----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출한 예산을 전입하여야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p> <p>제5조(일시차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회계연도 -----.</p>